

기관명

수 신
(경유)

제 목 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 송부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퇴직(해임·해고)자 통보서									
채용·고용의무자	기관명								
	대표자명				전화번호				
	소재지								
취업지원대상자	보훈번호				국가유공자와의관계				
	성명				생년월일(성별)	()			
	주소					전화번호			
채용일 또는 고용일					퇴직(해임·해고)일				
근무부서				직종			직급 등		
월 평균급여액					근무기간		년 월 일		
퇴직 사유 또는 해임·해고 사유									
군입대	[]	인수·합병	[]	능력개발·교육	[]	근무조건 불만	[]		
정년퇴직	[]	부도·회생절차신청	[]	저임금	[]	가구원간병	[]		
제적·사망	[]	임금체불(3개월 이상)	[]	적성부적합	[]	무단결근	[]		
신원이상	[]	전직	[]	자영	[]	근무태만(불성실)	[]		
휴·폐업	[]	거주이전	[]	명예퇴직	[]	부정행위	[]		
상이처재발	[]	회사이전	[]	능력부족	[]	범죄행위 등	[]		
건강이상	[]	퇴직금수령	[]	용역전환	[]	그 밖의 범죄	[]		
고용조정(정리해고) []									
※ 유의사항 : 퇴직 사유가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된 한 가지 사유에 √ 표시를 하되,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

팩스번호 ()

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